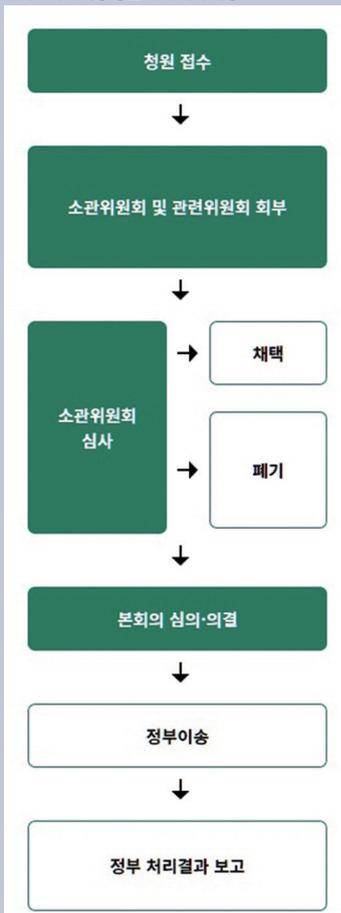


## 국회 처리 과정과 낚시계의 대응

# 8월 23일까지 심의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 상정

국회에 회부된 청원은 90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9월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의결에 부치게 된다.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 국회 처리 과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수가 10만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18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행정부가 외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어 있듯 상임위원회도 관련법을 나눠 맡아 심의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수 10만을 넘는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하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은 하천의 낚시금지 근거 법인 하천법과 저수지의 낚시금지 근거 법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을 다루고 있다. 국회에선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 동의 수가 10만이 넘은 5월 25일 다음날인 5월 26일, 국회 홈페이지를

원인 과반 출석해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하천법을 심의할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으로 16명이 출석해 9명의 찬성을 받아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심의 통과되면 9월 1일 개원 국회 본회의 상정

5월 26일 국회에 회부된 낚시금지법 개정 청원은 90일, 즉 8월 23일까지 소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게 된다면 최장 10월 22일이 심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정기국회에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원하여 100일 이내 기간 동안 운영된다. 만약 올해 개원한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2022년 9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외 30일 간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에 의해 발의된)법안은 전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처리된다. 현 국회의원 임기 내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이고 21대 정기국회는 2023년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국회에 회부된 청원의 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다. 문제는 10만 동의를 얻어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하더라도 심의 절차도 밟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국회는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가능성 여부, 타당성 등을 따져 심의할지 안 할지 정한다. 이에 대해 청원인이자 법률전문가인 유원기 씨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현재(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나 이미 폐기된 안건들을 본다면, 일부는 국회의 업무를 벗어난 역사성 청원(여성가족부 폐지 등)이며, 또 일부는 이미 심의중인 것에 대한 중복성 주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감한 정치적 논리가 적용된 청원(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봉인된 기록물 공개 등)으로 보입니다. 그와 달리 우리가 제출한 (낚시금지법 개정)청원은 새롭게 신설한 법률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특별법이지만 구법인)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의 일부 법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 이를 지자체들이 악용하는 것을 지적인 사례로 법 조항의 위법성, 다른 법과의 충돌 면에서 본다면 통상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법보다 신법이 충돌하면 신법(낚시 및 관리육성법) 우선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해 '본 청원이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공지했다. 하천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내용이다.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90일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계류된 상태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거치지 못한 청원은 자동 폐기된다.

심의 절차에서 청원은 소관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렇지 않은지를 위원회 소속 국회위원의 찬반 투표로 결정(의결)한다.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소관위원회 국회의

